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 일 시 : 2024. 11. 28.(목) 10:00
- 장 소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보정동 통장협의회 11월 임시회의 자료

보 정 동

●●● 목 차 ●●●

《보정동 소식》

1. 2024년 반장 현행화(위·해촉) 재안내 1
2. 2025학년도 취학아동 취학통지서 발급(온라인·우편) 안내 4

《시정 홍보》

1. 「2025학년도 용인특례시 정시대비 진학 컨설팅」 개최 안내 5
2. 「2024년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안내 6
3.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실시 안내 7
4.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반 운영 규칙」 개정 안내 8

2024년 반장 현행화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통장님들께서는 각 통의 반장 현황을 확인하여 반장 추천서 및 해촉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근 거 :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정원조례」 및 「용인시 반 운영규칙」
- 내 용 :
 - 2024. 12. 16.(월) 신규 및 연임 반장 위촉 예정
 - 2024. 12. 20.(수) 이후 2024년 반장 수당 지급 예정
- 대 상 : 총 39통 324반
- 임 기 : 2년(연임가능)
- 수 당 : 1인당 5만원(연 1회)

□ 협조사항 ※ [붙임1] 반장추천서, [붙임2] 반장해촉명단, [붙임3] 2024 반장위촉현황(별첨) 참조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에 2024. 12. 13.(금)까지 [붙임1], [붙임2] 서류 제출
 - [붙임1] 2024년 반장 추천서
 - [붙임2] 2023년 위촉 반장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한 해촉 대상자 명단
 - ※ [붙임2]해촉 대상자 명단은 [붙임3] 반장 위촉 현황(별첨)에서 임기 중인 반장에 한해 해촉자가 있을 경우만 제출

용인시 반 운영규칙 제2조의3(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전출하였을 때
4.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 문의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031-6193-6772)

[붙임1]

반 장 추 천 서

「용인시 반 운영 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 ()통 반장을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관할구역 (통/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								
10								

2024 년 월 일

추천인(보정 _____통 통장) 성명 : (인)

[붙임2]

반 장 해 촉

「용인시 반 운영 규칙」 제2조 및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 ()통 반장을 해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관할구역 (통/반)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사유
1					
2					
3					
4					
5					
6					
7					
8					
9					
10					

2024 년 월 일

추천인(보정 _____통 통장) 성 명 : (인)

교육부에서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 대상아동 : 2018년 출생 아동 ※ 전년도 입학연기자 및 2019년 출생 조기입학자 포함
- 발급방법 :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
- 발급기간 : 2024. 12. 2.(월) ~ 12. 20.(금)
- 내 용 :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 및 PDF 저장 가능)

□ 우편 취학통지서 발급

- 대상아동 : 2018년 출생 아동 ※ 전년도 입학연기자 및 2019년 출생 조기입학자 포함
- 발급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 발송
- 예 정 일 : 2024. 12. 9.(월) ~ 12. 20.(금)

※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과 상관없이 병행 통지

□ 초등학교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대상아동
 - 조기입학 : 만 5세(2019. 1. 1. ~ 12. 31. 출생아동)
 - 입학연기 : 만 6세(2018. 1. 1. ~ 12. 31. 출생아동) **※ 1회만 연기 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방
- 신청기간 : 2024. 12. 31.(화) 限

※ 문의 :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031-6193-6764)

개인별 맞춤형 대입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2025학년도 정시대비 진학컨설팅」을 개최하오니, 많은 수험생 및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용인특례시 정시대비 진학 컨설팅

정시대비

일시

2024.12.15. 일
13:00~17:30

장소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1 컨설팅

- 모집인원 : 총 120명
- 접수기간 : 12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사전접수
- 준비물 : 수능성적표, 학교생활기록부



홈페이지

용인특례시 대학입시박람회 [검색](#)



문의

031-230-2244(입시박람회 사무국)



홈페이지 접속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 문의 :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6193-2137)

「2024년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년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인 포함)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ONGIN SPECIAL CITY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024 용인 청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은 GH매입임대주택을 용인시 거주하는 청년 1인 창조기업인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공고일 2024. 11. 18. (월)

신청기간 2024. 12. 2. (월) ~ 12. 9. (월)

※ 방문신청은 신청마감일 16시까지, 등기우편은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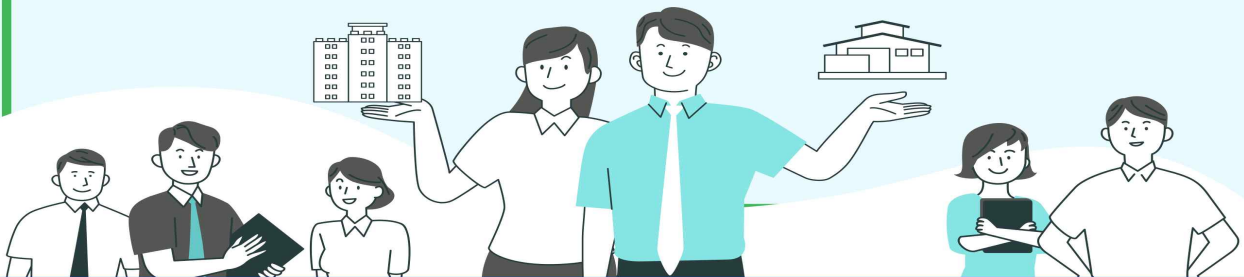
※ 주택내부 사전공개일 : 2024. 11. 28.(목) ~ 11. 29.(금) 10:00~16:00

대 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인 (예비 창업인 포함)

공급호수 총 16세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신청방법 용인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시청 홈페이지>용인소식>고시공고)



문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031-6193-2761)

※ 문의 :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6193-2761)

2024년도 5월부터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The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 등을 조정하여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되고 있사오니, 아래 사항에 대해 많은 홍보 바랍니다.

지하철도 된다! 어린이도 된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6 - 18세 경기도거주자라면 누구나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연간 24만원 (분기6만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의 100% 지원
※ 교통카드 태깅 기준(탑승권을 통한 교통 이용 실적은 제외)

- 준비물**
1. 대중교통을 이용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2.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의 지역화폐 또는 계좌번호
 3. 간편/금융/공동 인증서

※ 문의 : 1577-8459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 수도권 지하철
(GTX, 신분당선, 경전철 등 포함)

2. 수도권 버스
(공공버스, 광역버스, 똑버스 등)

3. 공유자전거
※ 만 13세 - 18세
'똑타' 앱을 활용한 이용에 한함

4. 버스·지하철 이용 시 태깅



※ 문의 : 용인시 대중교통과(☎ 031-6193-2297)

2024. 11. 13. 일자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및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오니 통장님들께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세부사항 규칙 전문 참조]

①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4호(행정기간 상훈) 개정
 - 배점기준, 배점인정기간 수정
(최근 5년 이내 수상자에 한해 훈격 차등 없이 수상 기간에 차등)
- 심사항목표 배점기준 개정
 - 행정기관 상훈 하향 조정(10%→5%), 통장·이장 활동 집중도 상향 조정(10%→15%)

② 용인시 반 운영 규칙

- 반장의 임무 역할 부여
 - 용인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행정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 추가
-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규칙안 폐지
 - 제4조(주부중심 반상회 운영), 제5조(여성반장제 확대 실시), 제8조(반상회 운영 평가제 실시)

※ 규칙 전문 열람 방법[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정보공개>자치법규>규칙명 검색]

※ 문의 : 용인시 자치분권과(☎ 031-6193-3075)